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57
----------	-----

제출년월일 : 1999.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가. IMF체제하에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행정자치부에서 허가된 최저세율로 적용하고
- 나. '98. 9. 15일 공포('98. 11. 17일부터 시행)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사항을 시세감면조례에 반영하고자함.

□ 주요골자

- 가.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현재 6단계 (0.3~7%)누진세율로 적용하던 것을 최저세율인 0.3%로적용(안제12조의2).
- 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15년간 전액 감면함(안제24조의2).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한 주택건설 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3을 적용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시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제2호 및 동조 제5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15년간 전액을 면제(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생 략) <신 설>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한 주택건설 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3을 적용한다.
제24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생 략) <신 설>	제24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감면)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시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제4항제1호·제2호 및 동조 제5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15년간 전액을 면제(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에 의한 감면은 제산을 취득한날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 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정한다.